

# 대한중양내과학회 보험정책 연구비상 지급규정

2020년 2월 24일 제정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임상중양학 관련 보험정책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비 보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명칭)

본 연구비의 명칭은 “대한중양내과학회 보험정책 연구비상”으로 한다.

## 제3조 (지급분야)

본 연구과제비는 임상중양학 관련 보험정책 분야에 제한하여 지급한다

## 제4조 (지급대상자의 자격)

- 1) 본 학술상의 수여 자격은 대한중양내과학회 정회원이면서 연회비 미납이 없는 자로 한다.
- 2) 국내에서 시행되는 연구에 한한다. (국내에서 시행되는 연구라 함은 교신저자가 국내 연구자이고 국내 연구자의 참여도가 50%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- 3) 다기관(multicenter), 다학제간의 공동 임상연구 (multi-disciplinary team approach)를 장려한다.
- 4) 한 번 수상한 자는 수상 후 2년간 지원할 수 없다.

## 제5조 (추천구비서류)

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중양내과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신청서 1통 (소정양식)
- 2) 이력서 1통
- 3) 사진(명함판) 2매
- 4) 3년간의 연구업적, 계획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(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2부)

## 제6조 (연구과제 심사)

연구과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선정 후, 상임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 다만 연구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수된 연구주제의 적절성을 보험정책위원회에서 자문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
## 제7조 (연구비 지급 세부 내역)

본 연구비는 대한중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 석상에서 1인(팀) 1,000만원 또는 2인(팀) 각 500만원(총 1,000만원)을 수여한다.

## 제8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

- 1) 연구진행사항은 다음 해 정기심포지엄에서 개최되는 보험정책 세션에서 발표한다.  
(연구결과는 수상 후 3년 이내에 대한중양내과학회 학회지 또는 SCI, SCIE 등재지, 국내학술등재지에 대한중양내과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한다.)

- 2) 연구 결과물 내용이 수정/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.
- 3) 연구 결과물이 게재된 학술지, 학회지, 교내 연구지 등은 3부 이상 학회에 제출
- 4) 대한종양내과학회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함.  
“본 연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”  
“The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”

#### 제9조 (연구비 환수)

제8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,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전액을 환수 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본 규정은 대한종양내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